

우수시험 · 검사기관 [] 지정신청서
[] 변경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뒤쪽 참조
신청인	기관 명칭		지정 번호	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				
	(전화번호:		팩스번호:		전자우편:
	)				
	대표자			설립 연월일	
기관 종류					
☐ 식품 등 ☐ 축산물 ☐ 의약품 등 ☐ 의료기기 ☐ 화장품 ☐ 위생용품					
신청내역	시험·검사 대상 품목				
	시험·검사 항목				
	시험·검사 인력(수)		명(실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검사원 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)		
	시험·검사실 면적 (㎡)		㎡(실제 실험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)		
변경사항	☐ 대표자 ☐ 기관 명칭 ☐ 소재지 ☐ 시험·검사의 품목 및 항목				
	☐ 기타()				
변경내용	변경 전				
	변경 후				
변경사유					

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,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전단,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시험·검사기관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이
가
다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우수시험·검사기관 지정신청: 뒤쪽 참조 2. 우수시험·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: 우수시험·검사기관 지정서 원본,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: 뒤쪽 참조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국가기술자격증 2. 사업자등록증명 3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 [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/m²]

작성 요령

- 기관 종류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적으세요.
-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
- 1.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·검사기관
 - 2. 식품·의약품분야 제조업자·가공업자·수입업자의 시험·검사 기관 또는 시설
 - 3.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 또는 연구소

우수시험·검사기관 지정신청 첨부서류

- 1.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(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)
- 2. 시험·검사 시설의 평면도
- 3. 시험·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(시험·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)
- 4.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

처리기간 및 수수료				
신청 사항		처리기간	수수료	
			서면민원	전자민원
지정신청		45일	38만원	34만2천원
지정사항 변경신청	1. 대표자	14일	19만원	17만1천원
	2. 시험·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			
	3. 시험·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			
	4. 시험·검사의 품목 및 항목	30일		

